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38

발의연월일: 2021. 1. 28.

발 의 자:정일영·고용진·김교흥

김수흥 • 박상혁 • 신동근

윤관석 • 윤후덕 • 이규민

이성만 • 이수진 • 이용빈

이형석 · 최인호 · 한병도

허 영ㆍ허종식ㆍ홍기워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은 취약계층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피해를 낳아 위기 극복의 양극화 현상을 야기하였음. 코로나1 9의 재확산으로 인한 영업 제한 상황이 장기화하며 소상공인은 생존권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정부가 지급한 즉각적인 현금지원 및세제 혜택 등의 정책은 급박한 위기의 불을 진화하는 데는 이바지 하였으나 영업의 재개 및 정상화를 위해서는 크게 부족한 상황임.

다수의 전문가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글로벌 팬데믹현상은 향후 재발할 것이며,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 주기가 단축될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함.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경제위기에 취약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금융지원을 위한 체계적 금융지원 제도를 구축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등의 사회적 재난 시 정부는 매출의 다과(多寡)에 불문하고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금융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동시에 이를 위해 필요한 공적자금의 수요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보증의 기능을 함께 동원하고자,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위기 등의사회적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으로 하여금 공적기금을 통해 무이자대출을 지원받게 하여 국가가 긴급구제를 위한 대여금의 이자를 지원하도록 하도록 하고 원금상환을 위한 거치기간을 설정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경기 회복 이후 차츰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소상공인 특화형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따라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조성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목적에 감염병 재난과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의 소상공인 피해구제의 목적을 추가하고(안 제19조), 기금의 사용에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안 제21조제1항제7호의2 신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법률 제 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성장 및"을 "성장,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의 소상공인 피해 구제 및"으로 한다.

법률 제1791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제24호를 제2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대출 및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 사업. 다만, 개별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했 개 아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설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의 소상공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 인 피해구제 및-----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 다. 법률 제17912호 소상공인 보호 | 법률 제1791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 여 사용할 수 있다. 1. ~ 23. (현행과 같음) 1. ~ 23. (생 략) <신 설> 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대출 및 이자지 원 등 금융지원 사업. 다만, 개별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

	<u>한다.</u>
<u>24</u> . (생 략)	<u>25.</u> (현행 제24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